

1996. 11.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 충주시사무의집면동위임조례 개정조례안
-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
-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증 개정조례안
-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증 개정조례안
-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증 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 결과

조례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제안설명자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96. 10. 4	96. 10. 8	제18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96. 11. 4)	기획담당관
충주시사무의 읍면동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96. 10. 21	96. 10. 22	제1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96. 11. 2)	시정과장
충주시 통 및 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주시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	96. 10. 7	96. 10. 8	제18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96. 11. 4)	사회과장
충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96. 10. 4	.	.	가정복지과장
충주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	.	.	문화회관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1) 제안이유

- 충주시 재정운영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서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로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

2) 주요골자

-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하며 공개대상 명시
- 재정운영상황을 시민들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방법 명시
- 시장의 권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한 사무인계인수시
인수받은 재정 관련사항 공개

나.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읍면동장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므로서 행정의 능률제고와 책임 행정을 실현하는 동시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총 51건의 운용조례증
 - 존치사무 22 건
 - 본청으로 환원한 사무 17 건
 - 폐지사무 12 건
- 개정조례내용 : 총 43개 사무
 - 존치사무 22 건
 - 신규위임사무 14 건
 - 내부위임규정의 조례흡수사무 7 건

다. 충주시통 및 반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아파트 건립과 과대한 통을 적정 규모로 통반을 증설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통반 증설현황

- 용산동 : 4개통 23개반
- 문화동 : 1개통 3개반
- 칠금동 : 2개통 8개반
- 안림동 : 3개통 16개반
- 호암동 : 1개반

3.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증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의료보호법 시행령과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와의
회계 직명을 일치시키고,
- 충주시직제규칙개정(‘96. 4. 18일 규칙 제99호)에 따라 기금출납원을
‘의료보장계장’에서 ‘사회계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코자 함.

2) 주요골자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회계공무원 명칭 개정
 -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 충주시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개정

■].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현재까지의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인상
 - 사용료 : 40,500원 ⇒ 81,000원으로,
 - 관리비 : 12,000원 ⇒ 24,000원으로,
- 사용자의 자격을 '충주시관할구역내에서6월이상주소를가진자'로 규정

■].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문화회관 사용 신청시 사용료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선납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불민을 해소하고 사용료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문화회관 사용신청시 사용료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선납도록 되어 있는 제14조 삭제
- 법제형식에 맞지 않는 용어등을 정비
- 문화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평균 18% 인상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가.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거 충북도로 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된 조례로,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회에 걸쳐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서 지방 재정의 전반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 재정운영상황 공개방법을 주민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된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나.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개정조례안

-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더많은 사무가 읍면동에 위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 본청으로 환원된 사무 17건은 읍면동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무이며 폐지 사무 12건은 관계규정이 폐지 되었거나 중복된 사무가 대다수로서 지방 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해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 충주시통일반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

- 영진아파트(용산동), 현대아파트(칠금동), 럭키아파트(안림동)의 주민 입주와 문화동 인구 밀집지역, 호암동 동평빌라 건축에 따른 분통, 분반의 배분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며,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동행정 업무수행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a.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 '95. 3. 4일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당 조례 제3조 내지 제7조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의료보호법 시행령의 회계직명과 일치되도록 변경하였으며,
- '96. 4. 18일 충주시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의료보장계가 없어짐에 따라 그 업무가 사회계로 분장되어 기금출납원이 사회계장으로 개정되는 조례 안으로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비를 100% 이상 조정하였으나, 법인 묘지보다 분양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누적되는 적자폭을 줄여 나가기 위하여는 앞으로 인상 조정이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 사용자의 자격을 '충주시 관할구역내에서 6월이상 주소를 가진 자'로 강화하여 개정한 것은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당조례 제17조에 시설 또는 설비등 훼손시 손해 배상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료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선납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으로서 삭제 하였으며,
- '85. 11. 6일 문화회관 개관이래 사용료를 조정한 바 없어 평균사용료 18% 인상은 사용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이나 당시와 비교한 결과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현실에 맞도록 매년 정기적인 사용료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요지

가.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질 의}

-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정이 늦은 이유는?

■ 답변

-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개정 ('94. 12. 22) 이후 동법시행령의 입법이 늦어졌기 때문임.

{질 의}

- 투명한 재정운영상황 공개방법은?

■ 답변

- 일간신문게재, 반화보 전면게재, 리후렛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나.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개정조례안

{질 의}

- 읍면의 재무계를 폐지하였는데 업무 위임사항은?

■ 답변

- 해당 읍면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정수 결정할 수 있으며, 세무업무는 총무계에서 추진하고 있음.

다. 충주시통일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질의)

- 부재자 사실확인 조치는?

☞ 답변

- 통반장의 확인으로 조치하고 있음.

라.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질의)

- 기금출납 명령관과 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원의 차이점은?

☞ 답변

- 업무상 차이점은 없으며 단지 상위법에 근거하여 명칭을 개정하는 것임.

마.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질의)

- 주덕 공설묘지의 현황과 사실 묘지와의 사용료 차이는?

☞ 답변

- 주덕 공설묘지는 10,000평을 분양받아 현재 180기분이 남아 있으며, 사용료는 사설 묘지에 비해 매우 저렴함.

(질의)

- 제5조 사용자의 자격에 있어 '사용자'라 함은 묘지에 묻힐 시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묘지사용 신청을 하는 유족을 말하는 것인지?

☞ 답변

- 본 조례에서는 묘지에 묻히게 될 사망자를 말함.

[질 의]

- 제5조 사용자의 자격중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 주소를 가진 자와 외국인(이하 '관외거주자'라 한다)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사용자 범위는?

■ 답 변

- 현재 지변, 교통사고, 불의의 재난사고로 연고자가 없는 경우를 말함.

[질 의]

- 제5조 별표의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에서 관외거주자의 경우 합계금액의 30%를 가산하여 수납 사용케 할 때, 어렵게 조성된 공설묘지가 관외 거주자의 과다 유입으로 관내 거주자의 수혜가 적어지는데 대한 의견은?

■ 답 변

-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천재지변등 대형사고로 인한 사망자중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Ⅲ.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증 개정조례안

[질 의]

- 조례 제14조를 삭제하므로 문제는 없는지?

■ 답 변

- 제14조는 보상에 관한 내용이고 조례 제17조에 시설 또는 설비등 해손시는 손해 배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설사용료는 계약 당일날 선납토록 되어 있어 시설사업 계약상 문제는 없음.

5. 심사결과

가.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나.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개정조례안

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

라.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증 개정조례안

마.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증 개정조례안 : 보류의결

바.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증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원안가결

6. 붙임

가.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나.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개정조례안

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

라.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증 개정조례안

마.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증 개정조례안

바.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증 개정조례안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의 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 할 수 있다.

제3조(주민공개대상)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7.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 ①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공개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시장의 퇴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5조 제1항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이 조례에 있어 읍.면.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권한의위임을 받아”라는 주인을 시행자명의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감독)시장은 제2조의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충주시조례제24호) 및 충주시내부위임규정(충주시훈령제17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것으로 본다.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통의 반명칭 및 관할구역의 용산동란중 제11통 "제3반"을 "제3반", "제5반" 및 "제6반"으로, 제24통 다음에 "제25통 내지 제28통"을, 문화동란중 제16통 "제1반 내지 제7반"을 "제1반 내지 제4반"으로, 제22통 "제3반"을 "제3반" 및 "제5반"으로, 제27통 "제4반"을 "제4반" 및 "제6반"으로, 제34통 다음에 "제35통"을, 직동란중 "직동"을 "호암.직동"으로, 호암제1통 "제4반"을 "제4반" 및 "제7반"으로, 칠금.금농동란중 칠금제5통 "제1반 내지 제5반"을 "제1반 내지 제6반"으로, 칠금제6통 "제1반 내지 제5반"을 "제1반 내지 제4반"으로, 칠금제6통 다음에 "칠금제7통" 및 "칠금제8통"을, 종민.안림.목벌동 란중 안림제1통 "제1반"을, 안림제4통 다음에 "안림제5통 내지 안림제7통"으로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 또는 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제6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명칭은 '95. 4. 4
부터, 회계공무원은 '96. 4. 18부터 사용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충주시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가진자에"를 "충주시 관할구역내에서 6월이상 주소를 가진자에"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 표]

구분 기준	합 계	사용료	관리비	관외거주자 가 산 금	비 고
5 제곱미터	원 105,000	원 81,000	원 24,000	합계금액의 30퍼센트	관리비: 15년간의 관리비 암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회의실"을 삭제한다.

제9조 제4항 중 "5%"를 "5퍼센트"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20/10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